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비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책무 부여〉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46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소비자는 제4조¹⁾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함을 소비자의 책무²⁾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u>행사하여야 한다</u> .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 ----- ----- ----- ----- ----- <u>행사하여</u>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

1)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다. ②·③ (현행과 같음)
----------	--------------------

- 최근 소비자가 구매·사용 중 발생한 불만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요구와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블랙컨슈머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기업의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증가되고, 결국 다른 소비자 및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³⁾된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일부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가 늘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책무에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노력을 추가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따르면 제1항에서 정당한 행사를 전제로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 및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의 책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현행법상 조문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규정에도 개정안의 입법의도는 충분히 담긴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서 추

3) 소비자의 불량 불평행동 동향 및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41호, 2013. 2, 배순영

가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로부터 구체화된 의무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행법과 개정안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